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51
----------	-----

2021. 6. 23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6월 10일

-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함.

- 법령 개정, 행정기구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 - (현행)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→ (개정)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
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(안 제2, 3조)
  -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정책관,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포함
  - 위촉직 위원에 남·여 청소년 포함
-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간사 등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관계공무원, 외부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(안 제9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제출배경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하고,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
#### □ 청소년 기본법

**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**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'충청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'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, 그 밖에 법령 개정, 행정기구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조례 제명**을 현행 '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'에서 '충청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'로 개정함.
  - '지방'은 중앙부처에서의 관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 용어로, 조례 제명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함. 또한 '구성 및 운영'을 삭제해도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없으므로,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.
- **안 제1조(목적)**에서는 일반국민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어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'법령 입안·심사 기준(법제처)'에 따라 사용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, 의미의 중복사용인“~제11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~제11조에 따라”로 개정함.
- **안 제2조 및 제3조**는 위원회 규정 방식 상 기능, 구성, 위원임기, 위원장의 직무 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, 현행 제2조를 제3조로, 현행 제3조를 제2조로 바꾸고,
 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제1항에 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위원회의 기능이 “자문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“심의 또는 자문”으로 변경함.

### □ 청소년 기본법

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~ 도지사 ~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- 위원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현행 “2인”에서 “1명”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현 기구명칭 및 업무 담당 부서에 맞춰 변경하였으며, 여성가족정책관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추가함.
- 위원회 위원수가 15명 인 점을 감안할 때, 부위원장은 1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, 당연직 위원에 도 청소년 정책의 담당부서장인 여성가족정책관과 도 청소년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추가함으로 위원회가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.
- 그리고, 위촉직 위원에 “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·여 청소년”을 포함하여, 청소년을 성별 비율에 맞춰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능동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.
  - ※ 위촉직 위원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한 것은 서울, 인천, 광주, 대전, 전남, 경남, 제주에 이어 충북이 8번째임.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.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위원회 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<u>충청북도교육청교육국장, 충청북도지방경찰청방법과장이</u> 되며, 위촉위원은 <u>관계기관·단체장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</u>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	<p><b>제3조(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 중 <u>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,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, 여성가족정책관,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</u>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</u></li> <li><u>2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li> <li><u>3.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·여 청소년</u></li> </ol>

-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 “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에서 “2년으로 하되,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”로 변경함.
- 이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<p>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p> <p><b>제8조(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④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<u>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</u> 하여야 한다.</p>
---

- 그 밖에 안 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, 제6조(회의), 제7조(간사), 제8조(회의록), 제9조(의견청취 등), 제10조(수당 등)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일부 문구를 개정하였음.
- 또한, 현행 조례에 있던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.
  - 이는 소규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그 필요성이 약하고, (타 시·도의 경우에도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음).
  - 특히 중복의 경우 타 시·도와는 달리, 청소년 복지·인권, 청소년 활동 진흥, 청소년 성문화 지원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’ 내의 운영위원회가 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, 별도의 실무위원회 구성은 업무의 중복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.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실무위원회 설치)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제9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,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조정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</li> <li>2.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li> <li>3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</li> <li>4.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/ol>	<p>&lt;삭 제&gt;</p>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·운영해야 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법적, 내용적 문제가 없으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절차적으로도 타당함.
- 특히, 선거연령 하향(만 18세)과 함께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체험 등 예비적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다시 정의되는 등 '보호가 필요한 존재'에서 '능동적인 시민'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참여방법의 다양화, 참여수준의 상향 등이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,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 당사자들의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의 참여를 조례로 보장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. 이에 청소년 위원의 위촉 방식에 있어 충청도 내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

#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  
발 의 자 : 이의영, 박형용, 이숙애  
이상욱, 장선배, 허창원  
윤남진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함.
- 나. 법령 개정, 행정기구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개정
  - (현행)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→ (개정)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
- 나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(안 제2, 3조)
  -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정책관,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포함
  - 위촉직 위원에 남·여 청소년 포함
- 다.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간사 등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라. 관계공무원, 외부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(안 제9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62호
- 다. 협 의 : 여성가족정책관
- 라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
5.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,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, 여성가족정책관,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
2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·여 청소년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.

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8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청소년 기본법

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·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⑥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의안에 따른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